

2012. 9. 17.(월)

보도자료

2012년 9월 17일(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시장분석팀 임정규 팀장(☎750-2650)
통신시장조사과 시장분석팀 이성학 사무관(☎750-2651) lsbak@kcc.go.kr

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」 제정

- 적용대상, 회계정리 방법 및 영업보고서의 종류 등 제시 -

미디어랩(KOBACO 및 MediaCreate)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한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」가 제정되었다.

현행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 토록 규정하고 있다.

본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기준의 목적,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,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보관 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※ 고시는 총칙을 포함하여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(2종) 및 부속 명세서(16종)으로 구성

오늘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 끝.

※ 참고 : 고시 주요내용

< 참고 >

고시 주요내용

□ 총칙(안 제1조 ~ 제6조)

- 본 회계기준의 목적,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 규정
-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, 손익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정함
-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

□ 재무제표(안 제7조 ~ 제10조)

-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자산, 수익 및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 표시하며,
 -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,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배부기준 제시
-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결합판매의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과 지원대상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 표시

□ 재무상태표(안 제11조 ~ 제13조)

-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·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임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도록 하며, 주요 자산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

□ 손익계산서(안 제14조 ~ 제16조)

- 모든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으며, 주요 손익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도록 함
- 방송광고대행사업 매출액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로부터 광고 위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로 규정하며, 매출원가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로 규정함

□ 기타 사항(안 제17조 ~ 제34조)

- (부속명세서) 방송광고매출액,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,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도록 함
- (영업보고서 제출 및 회계자료 관리) 본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며 관련 회계 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

※ 제출서류

재무제표	①재무상태표, ②손익계산서
부속명세서	①매출총이익명세서, ②방송광고 매출액명세서, ③지원대상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명세서, ④광고매출액분액명세서, ⑤수수료총괄표, ⑥수탁수수료명세서, ⑦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(방송광고대행자 총계), ⑧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(개별방송광고대행자별), ⑨결합판매 매출액명세서, ⑩광고판매대행사업외 매출액명세서, ⑪방송광고 협찬매출액명세서(방송사별), ⑫방송광고협찬매출액명세서(광고 대행사별), ⑬방송광고협찬매출액명세서(광고주별), ⑭ 판매관리비 명세서, ⑮주주 및 특수관계자 명세서, ⑯영업보고서 경영자확인서